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부서)의 장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1-97호
2021. 12. 17.(금)

차 례

조 례(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56호) ·····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57호) ····· 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58호) ····· 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1559호) 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조례 제1560호) ····· 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61호) ····· 2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62호) 3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조례 제1563호) ····· 3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1564호) ····· 4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565호) 4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66호) ·· 5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조례 제1567호) ····· 5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68호) ····· 62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69호) ····· 6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70호) 6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조례 제1571호) 7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72호) ····· 77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73호) 8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574호) 86

차 례

규 칙(2)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31호) ····· 9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32호) ····· 94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64호) ····· 97

고 시(4)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고시 제2021-143호) ····· 102
- 하천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 고시(고시 제2021-144호) ····· 103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고시 제2021-145호) ····· 104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1-146호) ····· 105

공 고(4)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1-1238호) ····· 106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공고 제2021-1255호) ····· 107
-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공고 제2021-1256호) ····· 108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1-1258호) ····· 115

입법예고(1)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1250호) ····· 121

공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5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4조 중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한다.

제7조 중 “실ㆍ단ㆍ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4조의2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건강생활지원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7, 5층 (법동)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법1동, 법2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참조란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동주택팀장”을 “주택복지팀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교육공동체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동주택팀장”을 “주택복지팀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본청 실·국장의 분장사무 (제7조 관련)

※엑셀파일 별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도모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1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

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무과”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과함(제4조).

다. 실・국 분장사무를 정비함(별표 1).

라.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비함(별표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5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62명”을 “77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45명”을 “75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7명”을 “2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77					
정무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774					
	3급	1	1				
	4급	5	4		1		
	5급	47	27	3	4	1	12
	6급 이하	721					
별정직	소계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1조).

나.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62명”에서 “777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45”명에서 “75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함(제2조 및 별표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5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를 “제117”로, “대덕구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대덕구 보건소장ㆍ사업소장 및”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대덕구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대덕구 보건소장ㆍ사업소장 및”으로 한다.

제2조 중 “대덕구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을 “대덕구”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3의 문화관광체육과의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란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시행 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자가 구청장에서 의회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던 관련 사항을 삭제함(제1조 및 제2조, 별표 1 삭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5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

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 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시행 2022. 1. 13.)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의 규칙 의견 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제2조 및 제3조).

나.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정함(제4조).

다.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을 정함(제5조 및 제6조).

라.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을 정함(제7조 및 제8조).

마.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정함(제9조 및 제1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6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역사문화 자원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 보존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역사문화”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소산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구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 과정을 말한다.

3. “전담부서”란 구 해당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

4. “실물자료”란 구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자료와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2. 지역주민, 단체, 기관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3.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조사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협조

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구의 주요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구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사고 등과 관련된 자료

3. 구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무형 소산

4.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5. 구 현대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역사문화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생산과 보존에 관하여는 구 관계 부서, 대상

자, 단체 등의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실물자료의 수집) 구청장은 구의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9조(도시역사문화의 보존) ① 구청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개) ① 구청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대여) ① 구청장은 공공・교육・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게 아카이브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활용) ① 구청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

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물 및 실물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3조(도시역사문화 자료구축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자료구축 및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덕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아카이브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대덕구와 관련된 역사문화 자원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 보존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대덕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다. 아카이브 구축계획 및 전문조사단 운영,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기록물의 생산 및 자료수집,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수집된 자료의 공개, 대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부터 제12조까지).

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6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평일”이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한다.
14. “주말”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 관련)

가. 전용사용료

(단위: 원)

<table>
<tr><th colspan="2">시 설 명</th><th>사용구분</th><th>기 준</th><th colspan="2">구 분</th><th>비 고</th></tr>
<tr><th colspan="2"></th><th></th><th></th><th>평일</th><th>주말</th><th></th></tr>
<tr><td colspan="2" rowspan="2">대덕문화
체 육 관</td><td>체육경기</td><td>1회
(1일,4시간)</td><td>40,000</td><td>60,000</td><td rowspan="9">○야간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징수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td></tr>
<tr><td>체육경기
이 외</td><td>1회
(1일,4시간)</td><td>50,000</td><td>75,000</td></tr>
<tr><td colspan="2" rowspan="4">을 미 기
축 구 장</td><td rowspan="2">체육경기</td><td>1회
(1일,2시간)</td><td>30,000</td><td>50,000</td></tr>
<tr><td>1회
(1일,4시간)</td><td>50,000</td><td>75,000</td></tr>
<tr><td rowspan="2">체육경기
이 외</td><td>1회
(1일,2시간)</td><td>60,000</td><td>100,000</td></tr>
<tr><td>1회
(1일,4시간)</td><td>100,000</td><td>150,000</td></tr>
<tr><td colspan="2">을미기공원
족구장</td><td>체육경기</td><td>1면,2시간</td><td>3,000</td><td>5,000</td></tr>
<tr><td rowspan="3">대 덕
국 민
체 육
센 터</td><td rowspan="2">수영장</td><td>체육경기</td><td>1회
(1일,4시간)</td><td>200,000</td><td>300,000</td></tr>
<tr><td>체육경기
이 외</td><td>1회
(1일,4시간)</td><td>300,000</td><td>450,000</td></tr>
<tr><td>다 목 적 실</td><td>1회
(1일,4시간)</td><td>40,000</td><td>60,000</td><td>○다목적실 1실 사용료 기준</td></tr>
<tr><td colspan="2">송촌생활체육
공원풋살경기장</td><td>체육경기</td><td>1면,1시간</td><td>10,000</td><td>20,000</td><td>○조명사용 시 주간 사용료에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징수</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 청 수 상
레 포 츠 센 터</td><td>체육경기</td><td>1회
(1일,8시간)</td><td>1,000,000</td><td>1,000,000</td><td rowspan="2">○사용가능 시간(09~18시)</td></tr>
<tr><td>체육경기
이 외</td><td>1회
(1일,8시간)</td><td>1,300,000</td><td>1,800,000</td></tr>
<tr><td colspan="2" rowspan="2">덕암체육공원
야 구 장</td><td>체육경기</td><td>1회
(1면,2시간)</td><td>40,000</td><td>80,000</td><td rowspan="2">○사용가능 시간(09~18시)</td></tr>
<tr><td>체육경기
이 외</td><td>1회
(1면,2시간)</td><td>50,000</td><td>100,000</td></tr>
</table>

나. 시설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사용구분	어 른	청소년	어린이	
대덕문화체육관		월 회원권	30,000	22,000	15,000	○1회 이용 단체 입장자 및 단체 월 회원권 입장자는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1회 이용	2,200	1,700	1,400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자유이용)	월 회원권	52,000	38,000	29,000	○1회 이용 단체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1회 이용	4,300	2,700	2,000	
	수영장(강습)	월 회원권	62,000	48,000	39,000	
	헬스장	월 회원권	40,000			
		1회 이용	2,000			
	다목적실	월 회원권	50,000			○프로그램 참가 월 회원
실외테니스장		실외코트(1면,1시간)	2,000			○조명사용 시 3,000원 추가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1회 이용	5,000	4,000	3,000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입장 시 보호자 동반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어린이스포츠센터		1회, 2시간	5,000		17,000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
대청수상레포츠센터	카누·카약	1회 이용	25,000	23,000	20,000	○입장가능 연령을 만 7세 이상으로 제한 ○1회 이용 단체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래프팅	1회 이용	20,000	18,000	15,000	
	오리배	1회 이용	10,000	6,000	4,000	
	노보트	1회 이용	20,000			
	수상자전거(2인승)	1회 이용	12,000			
	수상자전거(3인승)	1회 이용	15,000			
	범퍼보트(2인승)	1회 이용	15,000			

다.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음 향 시 설 (확성기 및 마이크)	기본료(30,000)+마이크 1대당 5,000원	
전 기 료	① 주변압기 전력기본요금×1.1 ② 전력사용량(kw)×전력요금×1.1	
냉방·난방 시설	기본료(30,000원)+(전기요금 및 유류대 실비)	
전 광 판	30,000원(1회)	

라. 중계 방송료

(단위: 원)

종 류		기 준	방 송 료		비 고
			TV	라 디 오	
프 로 경 기	국제경기	1일	30,000	18,000	
	국내경기	1일	18,000	10,000	
아 마 추 어	국제경기	1일	15,000	8,000	
	국내경기	1일	8,000	6,000	
체육 외 행사		1회	40,000	20,000	
녹화 또는 행사			중계 방송료의 1/2 해당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중계 방송료와 동일		

마. 상행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준 및 규격	사용료	비 고
에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광고 행위	1일 1개	5,0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 (다만,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그 밖의 사용료 (선전광고 게시 등)	1M×10M 이내	50,000	○ 5일 이내: 50,000원 ○ 매 1일 경과 시 5,000원 추가 ○ 연간 게시: 공개경쟁입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평일 및 주말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서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이고, 신설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일과 주말의 정의를 신설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제2조제13호・제14호).

나. 신규 시설(족구장, 어린이스포츠센터, 범퍼보트)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함(별표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6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호 중 “제5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를 “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

□ 주요내용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및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의4제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6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로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필요에 따라 사후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사후유품정리 비용 지원은 집주인이 저소득층인 경우에 한정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5. 사후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업무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 례 수행자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장례일자			장례방법		
지급계좌	금 융 기 관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함으로써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영장례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다. 업무점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6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친화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영유아의 공공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
2. 장난감도서관

3. 커뮤니티공간

4. 공유부엌

5. 육아도서관

6.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의 자기개발 프로그램, 취업・창업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 인문・교양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연계 등의 지원

3. 지역의 여성단체 및 여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성장 지원사업

4. 영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지원사업

5. 지역 자원과 연계한 공동육아 확대 지원사업

6. 양육 관련 정보 및 양육자에 대한 교류 장소 제공

7. 그 밖에 여성, 영유아와 보호자의 복지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센터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5조(센터의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2. 장난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려는 경우

3. 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경우

② 구청장은 센터 이용 신청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제6조(이용료등의 납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대여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단체 및 여성공동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아 또는 그 가족
6.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이용자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전액
4. 이용자가 이용일 전날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이용료등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 이용자가 이용일 당일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이용료등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9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이용자가 센터의 자료나 물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 이용료 및 장난감 대여료(제6조 관련)

가. 시설 이용료

구분		기준시간	이용료	비고
다목적실 (소모임 및 교육)	회의실 (강의실)	1회 2시간	30,000원	
	빔 프로젝트	1회 2시간	5,000원	
	냉난방기	1회 2시간	20,000원	
공유부엌		1회 3시간	기본(1명) 10,000원 추가 1명당 5,000원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 1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나. 장난감 대여료

구분	기준	연회비	비고
장난감	1일 1회 2개 (대여기간 14일)	일반회원 10,000원	연체료 1일 1개당 1,000원
	1일 1회 2개 (대여기간 21일)	통합(기관)회원 20,000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육아 여건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여성친화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담당할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운영으로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나. 육아복합마더센터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이용료등의 납부, 감면, 반환, 변상 및 손해배상,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6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회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 사항을 전면 정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나. 위원회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부터 제7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6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대덕구”를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아동이 성별, 인종”을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로, “신체조건”을 “재산, 신체조건, 장애유무”로, “차별을”을 “차별도”로, “동등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을 “구민”으로 한다.

제6조 중 “미치는”을 “주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대한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대한”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를 “구 의회”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4장(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제24조(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구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설 아동자치기구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아동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응대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 요청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권역별, 연령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3.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중 18세 미만인 아동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2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반영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중 “위촉·운영할 수 있다”를 “위촉·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밖”을 “그 밖”으로, “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활동은 해단 시까지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임의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문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제2조제1호).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중 비차별 요소를 추가함(제4조제1호).

다.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에 관한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함(제13조 및 제14조, 제27조).

라.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에 연임사항을 추가함(제19조, 제28조제3항).

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함(제21조제1항).

바. 아동의 구정 참여권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해 임시기구인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활동을 해단 시까지로 하고, 상설 아동자치기구인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6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

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

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table>
<tr><td rowspan="6">입양아동
부모</td><td rowspan="2">성명</td><td>부</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모</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 colspan="2">주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 rowspan="3">연락처</td><td>자 택</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핸드폰번호</td><td>부</td><td></td></tr>
<tr><td>모</td><td></td></tr>
<tr><td rowspan="3">입양아동</td><td colspan="2">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 colspan="2">출생장소</td><td></td><td>입 양 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입양기관</td><td colspan="3"></td></tr>
<tr><td>입금계좌</td><td colspan="5">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td></tr>
<tr><td colspan="6">「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양아동과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5">1.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td></tr>
</table>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나.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라.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부터 제9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6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출산장려 지원) 구청장은 출산 장려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사항 및 출생순위”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등의 사회 환경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급 근거의 범위를 효율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나. 법령에서 정한 서식으로 정비함(제5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삭제, 제6조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6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량 미만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당일 오후 7시부

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는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특수규격봉투에 담은 후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배출자 집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나 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스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상태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가정용 연탄재: 종량제봉투가 아닌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은 일요휴무로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을 50리터 이상의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종량제봉투별 무게 상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③ 배출자는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3 하단의 주) 5)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량제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소상공인 판매수익 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함(제10조).

나. 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 등 부담완화를 위해 종량제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 요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함(별표 3).

다. 변경된 제명을 현행화 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7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ㆍ단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1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주차장조성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기금과 타 회계 간 전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함.

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주차장조성기금과 타 회계 간 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제4조제2항 신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7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재해 및 화재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현장 및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의 착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용 산소공급마스크란”란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등을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산업용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

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란”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화재대피용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긴급구조훈련”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에 따른 긴급구조훈련을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활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산업용 및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방독마스크 착용현장(「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2. 밀폐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제1호에서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 제공 시설을 말한다.)

6. 다중이용시설 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착용 장소에서 긴급구조훈련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① 구청장은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산업용 산소공급 마스크 착용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용 산소공급마스크 착용의 실천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산업현장 및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서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를 구입 및 착용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소공급마스크의 용어 및 긴급구조 훈련, 안전교육의 용어를 규정함(제2조).

나. 산소공급마스크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산소공급마스크의 공급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산소공급마스크 구입 등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7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0호 중 “그 밖에 재난ㆍ재해”를 “재난ㆍ재해”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시설보수 비용의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이름과 조번호를 띄어쓰기 함(제1조 및 제3조).

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 규정을 신설함(제4조제1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7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관리사무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조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산책로, 광장”을 “다목적공간”으로, “여가”를 “문화ㆍ여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수준을 높이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0조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

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2. 행정 조직과 주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화 및 백서의 작성
6.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10조 중 “다수”를 “여럿”으로, “설치 및 인적구성,”을 “설치, 인적구성 및”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를 “민간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차례”를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을 고려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재정비함(제3조).

나. 법령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면제 대상, 면제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함(제3조의2 및 제3조의3).

다. 법령에서 정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를 재정비함(제9조).

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1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7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법 제15조3제4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규율 내용에 맞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함(제명).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라. 각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조).

마. 센터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3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운영지원과장ㆍ자치분권과장ㆍ세무과장ㆍ민원봉사과장”을 “운영지원과장ㆍ자치분권과장ㆍ세정과장ㆍ세원관리과장ㆍ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정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1] 구 본청 실·과·단장의 분장사무(제9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사무 전결 기준(제4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분장 사무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구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의 직급을 정함(제6조).

나. 분과에 따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의 분장사무를 정함(별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3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조례에서 현안수요 발생으로 일부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원의 총수를 “762명”에서 “777명”으로 15명을 증원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6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 설치 운영 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제아목의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내부위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란 중 “세무과”를 “세정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당면주요시책에 대한 책임제 실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한다.

[별표]

부서별 · 직종별 공무직 정원(제7조 관련)

부서별 \ 직종별	계	단순노무원	기술인부	공사인부	환경관리요원	행정실무원	청원경찰		
							소계	경비	단속감시
총 계	213	38	14	28	89	36	8	5	3
본 청	181	30	13	28	89	13	8	5	3
기획홍보실	2	2 구정홍보자료수집 1 구정전략홍보사무 1							
운영지원과	14	10 취사인부 4 비서실 민원처리 보조 1 비서실 및 부속실운영지원 3 복무관리 시스템 운영 1 4대보험 및 상시학습업무지원1	1 영양사				3	3	
세원관리과	1		1 체납징수						
민원봉사과	3	3 기록물관리 2 가족관계등록관리 1							
토지정보과	2	2 도로명주소관리 1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 1							
문화관광체육과	1	1 체육시설관리							
복지정책과	5					5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과	5	2 장애인편의시설관리 1 노인일자리관리 1				3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여성가족과	5					5 드림스타트4 특화분야교사1			
기후환경과	92		2 불법투기단속	1 재활용인부	89 환경관리요원				
공원녹지과	13	1 민원안내 및 전시시설 관리		10 공원녹지관리			2	2	
교통과	4	4 주차장시설유지관리 2 불법주정차단속업무지원 2							
위생과	1	1 식품위생관리							
도시계획과	3						3		3
안전총괄과	1	1 민방위시설관리							
주택정책과	4		4 광고물정비 3 위반건축물정비1						
건설과	21	1 지하수검침	5 노점상단속	15 도로보수 8 하수도보수 7					
공공청사과	4	2 청사실내청소		2 청사실외청소					
의회사무과	2	1 의원사무실 의전 및 사무보조	1 음향기기관리						
보건소	17								
보건행정과	1					1 결핵관리사업1			
건강정책과	16					16 통합건강증진사업15 예방접종등록센터 1			
복합문화센터	10	4 도서정리				6 개관시간연장사업			
동	3								
송촌동	2	2 송촌문화의집관리							
신탄진동	1	1 신탄문화의집관리							

[별표 1] 구 본청 보좌·보조기관 직렬별 정원(제2조제1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2] 의회사무과 직렬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3] 직속기관(보건소)의 직렬별 정원(제2조제3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4] 사업소 직렬별 정원(제2조제4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5] 동행정복지센터 직렬별 정원(제2조제5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규칙에서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에 따라 기관(부서)의 직렬별 정원을 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직렬별 정원을 배정함(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1-14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피허가자	소재지	지목	변경허가 내용			
				목적	점유 면적 (㎡)	허가 기간	
						당초	변경
2021-13호 (2021.12.13.)	배O환	읍내동 523	구거	경작	91	'20. 4. 11.~ '21. 12. 31.	'22. 1. 1.~ '26. 12. 31.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1-144호

하천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하천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

1. 하 천 명: 법동천
2. 피허가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
3. 점용위치: 읍내동 543-1
4. 점용면적: 15㎡
5. 점용목적: 토지점용(공작물설치)
6. 점용기간: 당초(2017. 1. 1. ~ 2021. 12. 31.)
   변경(2022. 1. 1. ~ 2026. 12. 31.).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1-14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피허가자	소재지	지목	변경허가 내용			
				목적	점유 면적 (㎡)	허가 기간	
						당초	변경
2021-14호 (2021.12.16.)	염O만	석봉동 711-1	하천	야적장	106	'17. 1. 1.~ '21. 12. 31.	'22. 1. 1.~ '26. 12. 31.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1-14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신대동 411-15	회덕로33번길 156	2021. 12. 17.	건물신축	회덕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3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송촌동 449-2	송촌북로 42	2021. 12. 17.	건물신축	행정구역명(송촌동)을 반영
문평동 51-5	문평동로 54	2021. 12. 17.	건물신축	행정구역명(문평동)을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1238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57-1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평촌동 57-1 번지	3㎡	4m	12m	㈜아○원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주택정책과(☏042-608-5145)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1255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공일자: 2021.12.07.
2. 제공받은자: ㈜ 가람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대전지사
3. 제공목적: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
4.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5.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소유자 성명, 주소
6.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소유자의 의견청취 우편발송 완료 시 까지
7. 공고기간: 2021.12.17. ~ 2022.01.16.
8. 공고방법: 대덕구 관보 및 홈페이지.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1256호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코자 하오니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2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 종	채용인원	주요업무	비고
기간제 근로자	행정보조	1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기간제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2. 공고기간: 2021. 12. 17.(금) ~ 2021. 12. 31.(금)

3. 응시자격

가. 채용 자격기준

1)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자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되어 있는 자

3)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등 전산자격증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 전형

나. 2차 시험: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시행

※ 면접주요내용 :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능력, 인품 및 성실성, 의사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사고의 건전성·발전 가능성

5. 응시원서 접수

가. 기간: 2021. 12. 17.(금) ~ 2021. 12. 31.(금) / 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별관 4층) / (☎042-608-6872)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직접 방문접수 또는 접수기간 내에 도착하는 우편물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 상반신 반명함판(3×4㎝)으로 부착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이력서 1부

라. 자격증(사본)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붙임 서식을 활용

7.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1. 4.(화) / 개별 유선통보

나. 2차 시험(면접): 2022. 1. 6.(목) / 1차 합격자에 한해 장소·시간 연락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 7.(금) 개별 유선통보

8. 채용기간 및 임금

가. 채용기간: 2022. 1. 10. ~ 6. 30.

나. 보수: 시급10,280원, 일급(8시간) 82,240원(주차 및 월차 적용)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 결정 이후에도 부적합한 사유 등 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근로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1일전에 개별통지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042-608-6872)로 문의 바랍니다. 끝.

응 시 원 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만일 합격 또는 고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고용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인 또는 서명)

<table>
<tr><td rowspan="8">대전광역시
대 덕 구</td><td>응시 번호</td><td rowspan="2">성 명</td><td colspan="3">(한글)</td><td rowspan="4">사 진
(반명함판)
(3cm× 4cm)</td></tr>
<tr><td></td><td colspan="3">(한자)</td></tr>
<tr><td>응시 직종</td><td rowspan="2">생년월일</td><td rowspan="2"></td><td rowspan="2">연령</td><td rowspan="2">만 세</td></tr>
<tr><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화
번호</td><td>· 자 택:
· 핸드폰:</td></tr>
<tr><td>최종학력</td><td colspan="5">학교(졸업)</td></tr>
<tr><td rowspan="4">경 력
(최 근)</td><td colspan="2">근무기간</td><td colspan="2">근무처명</td><td>담당업무</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able>

첨부 : 1. 자기소개서 1부. 2. 이력서 1부. 3. 전산자격증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간 인 ----------

<table>
<tr><td rowspan="5">면접당일
응시표를
왼쪽가슴
에 부착</td><td colspan="3">응 시 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td><td rowspan="5">사 진
(반명함판)
(3cm× 4cm)</td></tr>
<tr><td>응시번호</td><td rowspan="2">성 명</td><td>(한글)</td></tr>
<tr><td></td><td>(한자)</td></tr>
<tr><td>응시직렬</td><td rowspan="2">생년월일</td><td rowspan="2"></td></tr>
<tr><td>행정보조</td></tr>
</table>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분야 :

○ 응시동기 :

○ 자기소개(구체적으로 작성)

○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는 E-mail 주소 :

○ 기타

응시자　　성 명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사 진 (반명함판) (3cm× 4cm)	이 력 서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자택전화	
E-mail			휴대전화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사항	발령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 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1258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압류예고 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고
3. 공고(의견제출) 기간: 2021. 12. 17. ~ 2021. 12. 30.(14일간)
4. 기타
   가.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

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사회복지과(☎042-608-6805, 6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공 시 송 달 명 단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백**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60, 1**동 **6호(봉명동, 도안마을1단지)	55가****	2021-10-30 09:04:54	오정동 705-40	2021.11.10	2021.11.18	폐문부재
2	산림조합중앙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비래동, 산림조합중앙회)	162허****	2021-10-16 09:21:06	비래동 126-20	2021.11.10	2021.11.11	주소불명
3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서로23번길 8-19, 3**호(지족동)	08우****	2021-10-27 10:11:58	오정동 706-2	2021.11.10	2021.11.18	폐문부재
4	황**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64번길 41, 2**동 9**호(신탄진동, 대우새여울아파트)	01도****	2021-11-07 01:24:47	신탄진동 22-2	2021.11.15	2021.11.17	폐문부재
5	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고샅길 1*	34거****	2021-11-09 17:28:39	문평동 80-1	2021.11.15	2021.11.16	주소불명
1	강**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55, 1**동 9**호(둔산동, 크로바아파트)	106호****	2021-11-05 09:38:19	오정동 705-7	2021.11.24	2021.12.03	폐문부재
2	권**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서로 31, 1**동 8**호(중리동, 영진로얄아파트)	11부****	2021-11-15 07:19:59	중리동 275-29	2021.11.24	2021.11.26	폐문부재
3	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1**동 10**호(법동, 보람아파트)	35가****	2021-11-16 01:59:50	법동 191-1	2021.11.24	2021.11.26	폐문부재
4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486번길 10, 2동 2**호(비래동, 보성빌라)	82주****	2021-11-15 13:50:03	비래동 141-23	2021.11.24	2021.11.26	폐문부재
5	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282, 6동 4**호(둔산동, 수정타운)	37더****	2021-11-20 15:52:10	송촌동 525	2021.11.24	2021.11.26	폐문부재
6	선**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734번길 1*(동천동)	270러****	2021-11-20 15:48:31	송촌동 463	2021.11.24	2021.11.29	주소불명
7	조**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5길 4-*(원평동)	09가****	2021-11-26 08:26:41	중리동 251-1	2021.12.01	2021.12.06	폐문부재
8	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4번길 46, 3층 3**호(목상동)	27노****	2021-11-27 10:56:22	신탄진동 120-25	2021.12.01	2021.12.02	수취인불명
9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05동 3**호(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65주****	2021-10-06 09:12:03	석봉동 770	2021.12.08	2021.12.10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0	김**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24, 108동 2**호(금암동, 타운하우스이지)	155하****	2021-09-19 11:50:18	오정동 705-7	2021.12.08	2021.12.15	폐문부재
11	박**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5, 10동 5**호(홍도동, 청룡아파트)	대전80배****	2021-10-01 13:46:04	석봉동 770	2021.12.08	2021.12.13	폐문부재
12	엄**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45번길 17, B동 2**호(송촌동, 송촌원룸)	03더****	2021-10-02 06:47:51	송촌동 364	2021.12.08	2021.12.10	폐문부재
13	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07동 38**호(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13부****	2021-10-03 21:43:50	석봉동 770	2021.12.08	2021.12.10	폐문부재
14	정**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26, 109동 5**호(도마동, 경남아파트)	341구****	2021-10-07 15:49:19	덕암동 335	2021.12.08	2021.12.15	폐문부재
15	주**	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 28-1, 1**호(산성동)	104하****	2021-09-26 12:30:38	법동 218	2021.12.08	2021.12.16	폐문부재
16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105동 18**호(법동, 선비마을아파트)	19오****	2021-10-17 17:51:22	법동 440-4	2021.12.08	2021.12.10	폐문부재
17	윤**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256번길 8, 2**호(가양동)	59어****	2021-10-18 11:49:48	중리동 462	2021.12.08	2021.12.13	폐문부재
18	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용호로15번길 58, 1**호(성화동)	34고****	2021-10-20 14:30:54	법동 285-3	2021.12.08	2021.12.13	폐문부재
19	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67, A동 5**호(덕이동, 철산아파트)	68로****	2021-09-02 19:33:57	상서동 828-15	2021.12.08	2021.12.16	폐문부재
20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53번길 14-**, 지층(중리동)	264루****	2021-09-08 13:14:30	중리동 207-1	2021.12.08	2021.12.10	폐문부재
21	윤**	대전광역시대덕구 계족로664번길 27, 102동 15**호(법동, 한마음아파트)	대전대덕마****	2021-09-10 07:58:47	중리동 462	2021.12.08	2021.12.10	폐문부재
22	강**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810번길 20, 4**호(신탄진동)	74로****	2021-09-12 02:14:59	신탄진동 141-28, 골든리버빌 지하 2층	2021.12.08	2021.12.10	폐문부재
23	이**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83번길 39, 2**호(선화동)	01수****	2021-09-13 20:20:11	비래동 524	2021.12.08	2021.12.16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24	한**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168번길 82, 6**호(갈마동, 웰리움)	56러****	2021-09-14 14:51:16	오정동 705-7	2021.12.08	2021.12.15	폐문부재
25	강**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810번길 20, 4**호(신탄진동)	74로****	2021-09-14 23:57:23	신탄진동 737	2021.12.08	2021.12.10	폐문부재
26	강**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810번길 20, 4**호(신탄진동)	74로****	2021-09-21 23:50:12	신탄진동 141-28	2021.12.08	2021.12.10	폐문부재
27	㈜서연**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193번길 3-1, 1층 **호(주월동)	광주85사****	2021-09-22 18:13:16	신탄진동 733	2021.12.08	2021.12.16	폐문부재
28	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림4길 **(도마동)	50머****	2021-09-23 14:02:58	오정동 448-4	2021.12.08	2021.12.09	수취인불명
29	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106동 6**호(법동, 보람아파트)	24무****	2021-09-25 14:13:17	송촌동 459-4	2021.12.08	2021.12.09	수취인불명
30	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01동 15**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46조****	2021-09-25 19:48:12	법동 285-3	2021.12.08	2021.12.10	폐문부재
31	㈜시간***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	93도****	2021-09-27 11:45:19	중리동 462	2021.12.08	2021.12.16	폐문부재
32	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83-17, 2**호(갈마동, 황토빌라)	18소****	2021-08-03 22:23:56	송촌동 555	2021.12.08	2021.12.15	폐문부재
33	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230번길 10, A동 2**호(대흥동)	13너****	2021-08-10 14:31:56	문평동 83-1	2021.12.08	2021.12.16	폐문부재
34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12동 18**호(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37로****	2021-08-11 22:07:40	목상동 76-2	2021.12.08	2021.12.10	폐문부재
35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12동 18**호(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37로****	2021-08-15 05:17:12	목상동 76-2	2021.12.08	2021.12.10	폐문부재
36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105동 18**호(법동, 선비마을아파트)	19오****	2021-08-15 06:57:33	법동 440-4	2021.12.08	2021.12.10	폐문부재
37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48번길 5, 가동 4**호(덕암동, 부길빌라)	19머****	2021-08-24 17:54:07	상서동 838	2021.12.08	2021.12.10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38	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54번길 16, 6**호(상서동, 반석아파트)	57조****	2021-08-29 14:09:14	상서동 828-3	2021.12.08	2021.12.10	폐문부재
39	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2, 4동 7**호(법동, 삼호아파트)	63무****	2021-11-30 18:38:46	법동 280-2	2021.12.13	2021.12.15	폐문부재
40	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6길 45, 6**호(화양동)	97고****	2021-12-05 22:13:59	법동 440-4	2021.12.13	2021.12.16	폐문부재
41	김**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190번길 69, 가동 4**호 (연축동, 그린빌라)	15하****	2021-11-13 23:51:41	송촌동 494-1, 502동5-6라인	2021.12.13	2021.12.15	폐문부재
42	주**	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 28-1, 1**호(산성동)	104하****	2021-11-12 19:01:00	송촌동 448-1	2021.12.13	2021.12.16	폐문부재
43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7길 1*(대화동)	43모****	2021-12-05 13:49:07	법동 440-4	2021.12.13	2021.12.15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125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12.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1) 서면, 직접방문: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2) 전화: 042-608-6061

3) FAX: 042-608-3811

4) E-mail: popoum@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전화 : 042-608-60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으로,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을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

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14조”를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7조”로 한다.

제16조(「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제19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0조(「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②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⑥ (생 략)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 제148조----------. ③ ~ ⑥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 필요한 사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8조----------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 ①·② (생 략)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부의할 때 안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조례) ① (생 략)	제3조 (조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② ----------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 법 제32조제6항 ----------.
제7조 (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보(이하 "구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	제7조 (공포방법) ----------

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 법 제32조제6항----------.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인의 종류) ① (생 략)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2. (생 략) 3.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생 략) ③ (생 략)	제2조(공인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	제1조 (목적) -- 조례는「지방자

치법」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법」 제150조제3항---.
제3조 (선임방법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의 추천으로 의회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②·③ (생 략)	제3조 (선임방법 절차) ① --- 「지방자치법」 제73조--------. ②·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제7조----------같은 법 제9조제1항---------- 3. ~ 5.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

구민의 문화체험과 교육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또는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 ② (생 략)	제35조(위탁관리) ①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7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와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제8조 (이의신청) ① ~ ③ (생략)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준용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법」 제157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조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